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21 선고 2018가단229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A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1222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6. 16.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8. 8. 23. E은행에 63,620,5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4.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9,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19. 1. 3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32054)1) 을 받은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2. 21.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자신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표시한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원고를 ‘원고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 소송절차수계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은 2019. 2. 22. 이후 원고에게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A’로 표시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해 온 사실, 이 법원은 2019. 5. 9. 원고에게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원고보조참가인(기술보증기금)의 채권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8. ‘회생절차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부채를 신고하였고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준 것이므로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답변서와 함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7. 11.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제기되어 있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원래 이 사건 소송의 원고였던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2) 그 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2019. 7. 11. 제출됨으로써 같은 날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소취하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제기되어 있던 채권자취소소송을 채무자가 소송수계 후 취하함에 있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1.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한다.

판사 강종선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2층 호 101.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49317.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9317.7분의 55.106

1) 그 후 2022. 10. 2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2)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41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는 점(민사소송법 제244조)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수계신청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원고의 소송절차 수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